

제3장 다단계판매

제1절 다단계판매 총론

- 점포판매를 벗어난 무점포 / 특수 / 방문판매 방법의 한 형태로 1940년대 말 미국에서 시작되어 1972년부터 일본에서 성행하였고,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중반 화장품판매를 중심으로 성행.

- 1990년대 초 자석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다단계판매의 규제가 이제 소비자정책의 중심적 과제.

1. 다단계판매의 기능

- 판매업자가 점포유지비 또는 광고비 절감을 통한 유통마진을 축소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저렴하게 공급

- 신제품 또는 중소기업제품의 경우, 손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장점, 특히 유통시장의 개방과 함께 외국계 투자기업들이 국내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판매전략의 하나로 이용

2. 다단계판매의 문제점

- 다단계판매는 실질이 피라미드와 차이가 없으며, 판매원도 상거래의 경험이 전무한 학생/주부가 대다수.

- 신규가입자의 확보나 새로운 판로개척이 어느 시점에서 불가능

- 연고판매의 성격을 띠게 되어 피해의 확산이 큼

제2절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행정규제

1.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(§13)

- 공정거래위원회,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(상호, 주소 / 자본금 5억 이상 / 제34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서류,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등)

- 등록사항의 변경, 영업의 휴지 또는 폐지 / 휴업 후 영업개시도 신고

-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공개 및 자료 요청

- 결격사유(§14) : 한정치산자 등,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, 이 법 위반으로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및 이 자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등.

2.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(§34)

-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,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또는 방판법 제35조에 의해 설립된 공제조합(직접판매공제조합 / 특수판매공제조합)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

cf) 2003년 이후 공제계약 해지를 통한 불건전 사업자의 시장퇴출로 시장 정화기능 수행 : 2008년까지 6년 동안 19,960건 소비자피해 -> 146억원 보상 / 총 343개 업체 공제계약 해지).

3. 다단계판매원의 등록(§15) 및 탈퇴(§22)

-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 -> 다단계판매원의 등록·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으로 과도한 재화 등의 구입과 연간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안된다(§22 ①).

- 다단계판매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일정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도록 의무지우거나, 특정인을 그 특정인의 동의없이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하여서는 안된다(§22 ②)

- 다단계판매원 자격자(§15 ② : 공무원, 교원, 미성년자, 법인,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, 범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자 또는 실형을 선고받은 자 -> 탈퇴 규정 (§22 ③)

- 다단계판매원등록증 교부 / 다단계판매원수첩 교부

- 언제든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탈퇴의사를 표시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, 다단계판매업자는 탈퇴에 조건을 붙여서는 안되며, 판매원 수첩 등은 회수하여야 한다(§22 ④ ⑤)

4. 등록의 취소(§42 ④)

-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(§13), 자격사유에 해당되지 된 경우(§14),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이 해지된 경우(§34) -> 공정위에 의해 등록 취소.

제3절 소비자정보의 제공과 청약철회

1.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의무(§16)

- 방문판매와 동일(§7 준용)

2. 청약철회

(1) 청약철회의 기간과 상대방(§17)

- 다단계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방문판매의 경우와 동일하게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

-> 다단계판매원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먼저 다단계판매원에게 청약철회를 하고, 소재불명, 대금환급의 기대불가 등의 경우에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

- 다단계판매원은 3월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가 가능. 다만, 재고보유 허위보고에 따른 과다보유,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재화 훼손 등의 경우에는 예외.

- 계약체결 사실 및 시기, 재화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, 재화 등의 훼손여부 및 책임소재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재화를 판매한 자에게 입증책임.

(2) 청약철회의 효과(§18)

- 소비자 등 : 재화 등의 반환 -> 반환비용은 다단계판매자가 부담(§18 ⑧)하며,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
- 다단계판매자 :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대금 환급 (다만, 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대금환급의 경우에는 공급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일정 비율(5%-7%)로 비용 공제가능) -> 환급 지연시 지연배상금 지급.
- 신용카드 결제업자 : 다단계판매자는 대금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요청 -> 이미 지급받은 경우 지체없이 결제업자에게 환급 및 상대방에게 통지, 환급조치 등.
- 다단계판매자는 환급금액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차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청구할 수 있음.
- 다단계판매자는 재화가 일부 사용된 경우 상대방이 얻은 이익 또는 공급비용에 상당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음.
- 다단계판매자, 대금지급을 받은 자 또는 계약체결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대금환급과 관련하여 연대책임 부담.

3.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(§19)

- 방문판매의 경우와 동일(§10 준용)

제4절 후원수당

- 개념 법 §2 제7호 : 판례는 후원수당의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판매방식을 다단계판매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.
- 다단계판매업자가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가격(부가가치세 포함)의 100분의 35 이내(§20 ③).
-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은 객관적이며 명확하게 정해야 하며, 기준 등의 변경은 절차에 따라야 한다(3개월 전 통보 등).
- 다단계판매원에게 고지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다르게 산정·지급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차별해서는 안된다. -> 다단계판매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열람 허용.
* 다단계판매업자는 일정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 또는 후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위판매원 또는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관계없이 후원수당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없다(피라미드와 구별)
- 후원수당 관련 표시·광고의 규제(§21)
다단계판매원 등에게 허위정보제공 금지 및 후원수당 지급현황 고지 의무 / 다단계조직의 운영방식 또는 활동내용에 관한 허위·과장 사실 유포 금지.

제5절 금지행위 (§23)

- ① 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판매원들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의 합계액의 35%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(§20 ③)
- ② 개별 재화의 가격을 130만원 이상으로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(제13호)
- ③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(제1호)
- ④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(제2호)
- ⑤ 다단계판매원에게 5만원 이상의 비용 그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(제3호)
- ⑥ 다단계판매원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상유없이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(제4호)
- ⑦ 청약철회 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·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(제5호)
- ⑧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등 강매하거나 하위판매원에게 판매하는 행위 (제7호)
- ⑨ 다단계판매원이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서의 등록을 강요하거나 다단계판매원이 그 하위판매원에게 재화 등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(제9호)
- ⑩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·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(제10호)
- ⑪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 (제12조)
- ⑫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·양수하는 행위. 다만 다단계판매원의 지위 상속 및 사업의 양도·양수·합병은 제외 (제15조)

-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(유사수신행위, 금융피라미드)를 하여서는 안된다 (§23 ②)

* 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 (§27)

-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을 모집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의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함에 있어서 제23조의 금지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의 내용을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고지 (제1항)
-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다단계판매원이 제23조를 위반한 행위에 의하여 다른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 (제2항) -> 다단계판매원에게 구상 (제3항 후단)
- 배상책임의 기준은 위반행위 관련매출액을 상한으로 하여, 다단계판매원의 위반행위와

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다(제3항 전단)

제4장 계속거래 등

제1절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의무

-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성명·상호·주소, 재화의 종류·대금지급방법, 계약의 해지와 그 행사방법, 사업권유거래의 경우 사업에 관한 거래조건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며, 동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(§28) -> 10만원 이상, 3개월 이상을 거래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, 사업권유거래의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그 금액이 30만원 이상을 거래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.

제2절 계약의 해지

-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(§29) -> 반환할 수 있는 재화 등의 반환과 대금의 환급 또는 위약금의 경감 등의 조치(§30 ②)
- 계속사업자의 귀책사유없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그로 인한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, 가입비 그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다(§30 ①).

=> §28조 - §30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(§45).

제5장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와 감독

1. 위반행위의 조사

- 공정거래위원회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범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. 다만 다단계판매의 위반사실은 공정위 또는 시·도지사가 조사(제37 ①)

- 방문판매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, 누구든지 그 사실을 공정위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(§37 ④)

- 공정위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(§42)를 명하지 않거나 과징금(§44)을 부과하지 않는다.

2. 행정적 제재

(1) 시정권고

- 공정위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당해행위의 중지, 의무이행 등을 권고

할 수 있다(§41 ①) -> 권고 수락시 시정조치를 명한 것으로 본다(§41 ③)

(2) 시정조치

- 당해 행위의 중지, 의무이행,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, 그밖에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(§42 ① ②)

(3) 영업정지와 등록취소

-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(§42 ④ 본문)

-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한 경우, 다단계판매업의 등록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->등록취소가능(§42 ④ 단서)

(4) 과징금

-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곤란한 경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과 가능.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(§44 ①)

3. 벌칙

- 미등록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선·관리·운영한 자 /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자 :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(§51 ①)

- 다단계판매원에게 일정수의 하위판매원 모집을 강제한 자 :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(§52)

- 다단계판매업자의 허위 변경신고한 자 / 시정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(§53)

- 다단계판매업자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: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(§54)

- 방문판매업자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(§55)

- 방문판매의 허위계약서를 교부한 자 : 1천만원 이하의 벌금(§56)

-> 양벌규정 : §51 - §56

4. 과태료(§58) : 청약철회 후 재화·용역의 대금을 환급하지 않는 자(1천만원 이하) / 방문판매업자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자(500만원 이하)